

예탁증권담보용자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예탁증권 담보용자(이하"용자" 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고객(이하"용자거래자"라 한다)과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간의 용자거래를 함에 있어 적용한다.

제2조 (관계법령의 준수)

용자거래자와 회사는 관계법규, 관련규정, 규칙 및 이에 관한 조치사항을 준수한다.

제3조 (용자의 구분)

① 일반담보용자란 용자거래자의 증권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증권을 담보로 용자를 받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주식담보용자 : 회사와 용자계약을 체결한 용자거래자가 용자거래자 계좌에 예탁된 상장주식 중 <별첨>에서 정하는 주식을 용자담보로 지정한 후 용자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 용자가가능금액 범위내에서 용자담보평가금액에 <별첨>에서 정하는 용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용자받은 후 상환시까지 용자이자를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상환기일 또는 그 이전에 용자금과 잔여이자를 상환하는 용자거래

2. 채권담보용자 : 회사와 용자계약을 체결한 용자거래자가 용자거래자 계좌에 예탁된 채권 중 <별첨>에서 정하는 채권을 용자담보로 지정한 후 용자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 용자가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용자담보평가금액에 <별첨>에서 정하는 용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용자받은 후 상환시 까지 용자이자를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상환기일 또는 그 이전에 용자금과 잔여이자를 상환하는 용자거래

3. 수익증권담보용자: 회사와 용자계약을 체결한 용자거래자가 용자거래자 계좌에 예탁된 수익증권 중 <별첨>에서 정하는 수익증권을 용자담보로 지정한 후 용자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 용자가가능금액 범위내에서 용자담보평가금액에 <별첨>에서 정하는 용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용자받은 후 상환시까지 용자 이자를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상환기일 또는 그 이전에 용자금과 잔여 이자를 상환하는 용자거래

4. 파생결합증권담보용자 : 회사와 용자계약을 체결한 용자거래자가 용자거래자 계좌에 예탁된 공모파생결합증권 중 <별첨>에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용자담보로 지정한 후 용자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 용자가가능금액 범위내에서 용자담보평가금액에 <별첨>에서 정하는 용자 비율을 곱한 금액을 용자받은 후 상환시까지 용자 이자를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상환기일 또는 그 이전에 용자금과 잔여 이자를 상환하는 용자거래

② 매도담보용자란 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증권을 담보로 금전의 용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용자 약정 및 청구)

① 용자거래자는 용자를 함에 있어 회사에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여 용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전자거래서비스약정이 체결된 용자거래자에 한하여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직접 용자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용자약정은 해지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하며, 용자약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자약정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용자거래자가 용자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문서, 전화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방법으로 용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용자거래자는 용자약정을 해지하기 전까지 용자한도 범위 내에서 문서, 전화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에 의해 용자를 받을 수 있다.
- ⑤ 용자약정시 인지세액은 용자거래자와 회사가 각 50%씩 부담한다.

제5조 (용자한도)

회사는 용자의 종류별로 1인당 용자 최고 한도금액을 용자거래자에게 안내하며, 용자거래자는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용자 최고 한도 내에서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용자금액)

- ① 회사는 용자거래자가 용자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용자를 할 수 있다.
 - 1. 일반담보용자의 경우 각 담보증권의 종류별로 <별첨>에서 정하는 종목별 한도 등
 - 2. 매도담보용자의 경우 매도주문이 체결된 금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범위
- ② 회사는 매도담보용자를 함에 있어 용자실행일 전일에 발생한 용자가능금액 중 일부가 매도담보용자에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에 용자실행일 전일의 잔여 용자 가능금액을 우선적으로 용자에 사용하며, 용자거래자가 이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일의 용자가능금액을 사용한 용자금액에 대한 용자이자는 실제 용자실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 (용자금 지급 방법)

회사는 용자금을 용자약정 체결 시 용자거래자와 약정한 계좌로 입금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 (용자기간)

- ① 일반담보용자의 용자기간은 용자 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매도담보용자의 용자기간은 용자 일로부터 당해 담보증권의 매도대금 결제일까지로 한다.

제9조 (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

용자거래자는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용자이자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이하 "약정기일"이라한다)에 납입하여야 하며, 용자이자를 약정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용자금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담보의 징구)

- ① 회사는 용자금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하는 용자비율에 해당하는 담보를 징구한다.
- ② 일반담보용자의 담보는 용자거래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당해 예탁증권에 설정하는 질권으로 한다. 단, 매도담보용자의 담보는 용자거래자가 매도하여 체결된 매도증권에 설정하는 질권으로

로 한다.

- ③ 수익증권 담보용자시 담보증권으로 지정된 수익증권이 결산에 의해 재투자 또는 현금배당이 되는 경우 담보가치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 ④ 수익증권 담보용자시 담보유지비율 산출에 포함되는 위탁자예수금의 범위는 위탁자예수금 중 '수익증권 담보용자 부담보현금(이하 "부담보현금"으로 한다.)'으로 지정된 위탁자예수금에 한한다. 단, '부담보현금'으로 지정된 위탁자예수금인 경우에도 계좌에서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수금변제에 우선 충당된다.
- ⑤ 질권설정에 대한 약정은 용자 약정시 함께 체결된 것으로 본다.
- ⑥ 담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계좌 내 두 개 이상의 용자가 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단, 주식과 채권 담보용자시 담보비율은 합산 계산되나, 수익증권 담보용자는 담보비율이 별도로 계산된다.

제11조 (추가담보의 징구)

- ① 용자를 함에 있어 용자거래자는 담보로 납부한 대응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이하 "담보 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기한(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 요구 시 그 요구일로부터 추가담보제공기간(요구일 및 증권시장의 휴장일은 제외한다) 동안 담보증권의 가격 변동 등으로 담보 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자거래자에게 통보하였다면 용자거래자는 추가담보 제공기간 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추가담보는 현금,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대응증권에 한한다.

제12조 (용자의 상환 및 연장)

- ① 일반담보용자거래자는 담보용자의 용자금 및 용자이자를 상환기일에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기일 이전에도 용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상환이나 담보증권을 매도하여 상환할 수 있다.
- ② 매도담보용자의 용자금 및 용자이자에 당해 담보증권의 매도결제일에 매도결제 대금으로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자동상환 되며, 용자거래자는 상환기일 이전에도 용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 ③ 매도담보용자의 용자금 중 일부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 실행일 전일의 잔여 용자가능금액인 경우 해당 부분의 상환일은 전일에 매도체결된 담보증권의 매도결제일로 한다.
- ④ 용자거래자는 상환기일 이전에 일반담보용자의 상환기일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나, 담보가액이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에 미달하거나 기타 <별첨>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용자거래자의 연장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제13조 (담보권의 실행 및 임의상환)

- ① 회사는 상환기일 이전에 용자거래자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용자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매도담보용자에 있어서는 용자금이 자동상환되므로 회사가 상환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용자거래자가 제11조에 의한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용자금의 변제에 총당할 수 있다. 이 때 회사가 추가담보의 납부 요구 시 제11조 제1항 단서의 내용을 용자거래자에게 통보하였고, 임의상환정리일 전일에 추가담보 제공기간 동안 변동된 담보부족액을 최종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정리를 할 수 있다.

제14조 (임의상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투자자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우선총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을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 하는 호가에 의해 임의처분하여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총당할 수 있다. 다만 담보증권이 수익증권인 경우는 회사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처분하고 상장채권인 경우는 증권시장 또는 장외시장을 통하여 임의처분하며, 담보증권이 파생결합증권인 경우는 회사가 발행회사에 상환청구하는 방법으로 처분한다. 기타 증권은 회사와 용자거래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른다.

1. 용자금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용자이자, 매매수수료 및 제세금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용자거래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용자거래자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용자거래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주식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1항에 의한 담보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용자원금의 순서로 총당한다.

제15조 (담보권의 효력범위)

담보권은 제13조에서 정한 용자의 임의상환정리로 용자금이 완전하게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용자거래자가 용자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한 담보증권의 이자, 배당금, 배당신주, 무상신주 및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16조 (담보증권의 활용 및 담보의 반환)

회사는 용자거래자가 용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증권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담보를 반환함에 있어 종목, 수량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제17조(기한의 이익상실)

① 용자거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최고나 통지 없이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용자거래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의 경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의 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의 경우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4. 용자거래자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 한 어음 또는 수표가 채무불이행 기타 용자거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 ② 용자거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용자거래자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용자거래자는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기에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용자거래자의 제17조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으로 인하여 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때
 3. 용자거래자의 제17조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용자거래자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용자거래자가 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용자거래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즉시 회사는 용자거래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용자거래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제14조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총당하는 경우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용자이자, 용자원금의 순서로 총당한다.
- ⑤ 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인 경우에도 동 상실사유가 회복 등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부활할 수 있다.

제18조 (금지사항)

회사는 상환기일이 경과된 용자금이 있는 용자거래자, 추가담보 미제공자, 또는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용자거래자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미상환용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 한한다.

1. 당해 용자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증권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제19조 (용자의 제한 및 중단)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정보 또는 <별첨>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예탁증권담보용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약관의 변경)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용자거래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용자거래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용자거래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용자거래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용자거래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용자거래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용자거래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용자거래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주소변경 등의 신고)

용자거래자는 주소, 사무소 기타 연락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2조 (기타)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자거래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제23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기초한 용자에 관하여 회사와 용자거래자 또는 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한다.

제24조(분쟁조정)

용자거래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폐지) 이 약관 시행일부터 예탁증권매도담보용자약관은 이를 폐지한다

제 3조(경과규정) 이 약관 시행전에 예탁증권매도담보용자약관에 의한 용자거래 및 제신고등은 이 약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 15조 1항 2는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제6호는 201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제10호는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제9호, 제13호는 201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제2호, 제10호는 2014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제11호는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제10호는 2015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제16호는 201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3조제1항제1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주식은 다음과 같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으로 다음의 증권을 제외한 증권으로 한다.

- 관리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 위탁증거금 100%선정종목
- 회사 홈페이지(홈 > 고객지원 > 유진도우미 > 공지사항)에 게시하는 담보설정 불가종목 (재무적 신용평가)
- 신규상장 후 20일이 미경과한 종목

2. 제3조제1항제1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용자비율은 다음과 같다.

종목등급	S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용자비율	60%	60%	50%	40%

- * 용자담보평가금액은 전일종가 기준
- * 용자거래자 보유주식의 종목등급은 대출신청전에 회사 홈페이지(홈 > 신용/대출 > 예탁증권담보대출 > 담보대출가능종목), HTS 또는 회사담당자와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3. 제3조제1항제2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채권은 다음과 같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국공채, 지방채 및 AA등급 이상인 금융채와 회사채 (단, 다음의 채권은 제외한다.)

- 원금분할상환채권, 주식관련사채, 옵션부사채, 하이브리드채권, ABS, FRN(변동금리부채권), 외화표시채권 등

4. 제3조제1항제2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용자비율은 다음과 같다.

전일 시가 평가금액의 70%. 다만, 전일 시가 평가금액 기준으로 대출이 되므로 신규상장 채권의 경우 신규상장 당일 채권담보용자는 불가하다.

- * 시가 평가금액 : 신용평가기관(NICE, KIS 등)에서 제공한 기준가격

5. 제3조제1항제3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익증권은 다음과 같다.

회사 홈페이지 내(홈 > 고객지원 > 업무안내 > 대출/신용서비스 > 담보대출 >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안내한 수익증권

6. 제3조제1항제3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용자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용자비율
주식형	평가금액의 60%
혼합형 원금보장형ELF 이익상환이 확정된 부분보장형/비보장형 ELF	평가금액의 60%
채권형 MMF	평가금액의 70%

- * 평가금액은 당일 기준가 기준

7. 제3조제1항제4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은 다음과 같다.

회사가 발행한 (부분)원금보장형 공모파생결합증권

8. 제3조제1항제4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용자비율은 다음과 같다.

액면가격의 (70%)

9. 제5조의 “별첨” 에서 정하는 “ 1인당 용자 최고 한도금액은 다음과 같다.

1) V-VIP등급 고객 : 30억원

2) VIP등급, Royal 등급, Gold등급, 일반등급 고객 : 20억원

3) 재외국민은 고객등급에 상관없이 10억원

4) 신용용자 적극투자형 선택 고객은 고객등급에 상관없이 3억원

5) 매도담보용자금, 신용용자금, 주식담보용자금, 신용대주금을 통합하여 한도 관리

* 용자거래자의 등급 (V-VIP, VIP, Royal, Gold, 일반등급)은 대출신청전 회사가 용자거래자에게 고지하거나 용자거래자가 HTS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10. 제6조제1항제1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종목별 한도 등은 다음과 같다.

구분	S등급 종목	A등급 종목	B등급 종목	C등급 종목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30억원	10억원	5억원	2억원
회사전체 종목한도	MIN [총 발행 주식수의 10%, 150억]	MIN [총 발행 주식수의 5%, 100억]	MIN [총 발행 주식수의 4%, 40억]	MIN [총 발행 주식수의 3%, 20억]
개인별 종목한도	총발행주식 수의 3%	총발행주식 수의 2.5%	총발행주식 수의 2%	총발행주식 수의 1.5%

* 신용용자 적극투자형 선택 고객은 아래와 같이 별도 지정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3억	1억		0.5억

11. 제6조제1항제2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식매도담보용자 : 직전영업일 및 당일 매도 체결된 주문에 대하여 수도결제(3일결제) 이전에 매도체결금액의 98%이내.

2) 수익증권매도담보용자 : 펀드매도 신청 후 결제대금 지급일까지 매도대금을 담보로, 국내펀드는 대출신청 당일 기준가 대비 90%, 해외펀드는 70%이내.

12. 제8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종목등급	S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용자기간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만기연장	3개월 단위 연장 (최장 2년)			연장불가

* 용자가능등급 종목이더라도 회사 기준에 의해 위탁증거금 100%적용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신규담보대출, 만기연장, 선물옵션대용지정이 불가하다.

13. 제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V-VIP	VIP	Royal	Gold	일반
일반담보용자	연7.5%	연7.5%	연8.0%	연8.5%	연9.0%
주식매도담보용자	연9.0%				
수익증권매도담보용자	연8.0%				

* 대출기간이 1년 경과한 담보용자의 만기연장 이자율은 연9.0%

14. 제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매월 첫 영업일 및 상환일

15. 제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연14%)

16. 제11조제1항, 제12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 및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은 다음과 같다.

담보유지비율 (140%), 요구일로부터 2영업일(요구일 당일 포함)

* 다만 당일종가 기준 담보유지비율 100% 미만인 경우에는 요구일 당일까지로 한다.

17. 제12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 연체정보등록자, 압류계좌, 보호예수지정계좌, 질권설정계좌, 위탁증거금 미징수 법인계좌, 이자미납계좌, 미상환융자금계좌 등

18. 제14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자보유주식 매도시 수량산정방법(개별종목)

☞ 담보부족 해소를 위한 반대매매인 경우 전액상환방식으로 수량계산 (추가납부기한 다음날 반대매매시)

- 전액상환방식 :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으로 담보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임의처분 제비용을 제외한 매도금액 전액을 신용공여금액 상환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처분 대상 증권수량을 산정하는 방식

반대매매수량=	담보부족금액+위탁자미수금을제외한각종미납금
	[반대매매일하한가*(1- 0.03)] *1.4-전일종가

• 0.03 : 수탁수수료+증권거래세+농특세+신용공여이자및연체료해당금액

• 1.4 : 신용담보적용비율

예시) SK하이닉스 100주 보유, 전일종가 40,000원, 융자금액 3,000,000원,

담보부족금액 200,000원 경우

반대매매수량=	200,000원	= 100주
	$[28,000\text{원} * (1 - 0.03)] * 1.4 - 40,000$	

* 반대매매수량은 100주이며, 임의처분 금액 280만원이 용자금액 300만원보다 작아 추가로 20만원 입금 필요

19. 제1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 외국인, 연체정보등록자, 압류계좌, 보호예수지정계좌, 질권설정계좌, 위탁증거금 미징수 법인계좌, 담보부족계좌, 미상환용자금계좌 등